산학협력단 직제 규정

제정 2015. 08. 13.
제1차 개정 2015. 11. 02.
제2차 개정 2016. 04. 11.
제3차 개정 2016. 11. 21.
제4차 개정 2017. 03. 17.
제5차 개정 2017. 07. 21.
제6차 개정 2020. 0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직제 규정 제29조 및 산학협력단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단장, 부단장

제3조(단장) 단장은 산학협력단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기관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산학협력단을 대표한다.

제4조(부단장)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단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5조(보직 및 임기)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과 소속기관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행정부서

제6조(행정부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내 행정지원조직을 둔다. 세부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명시한다.

제5장 소속기관

제7조(소속기관장) 소속기관에는 소속기관장을 두며, 상지대학교 교직원과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제8조(환경분석센터) ① 센터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토양분석 및 관련 운영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 내 행정부서를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2016. 11. 21. 개정) (2021. 01. 29. 개정)
② 부서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2016. 11. 21. 신설)

제9조(창업보육센터) ① 센터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 내 행정부서를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2016. 11. 21. 개정)
② 부서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2016. 11. 21. 신설)

제10조(친환경농산물인증원) ① 원내 원장을 두며 원장은 인증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내 행정부서를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2016. 11. 21. 개정)
② 부서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2016. 11. 21. 신설)

제11조(학교기업 상지종합축산식품) 조삭제 (2017. 07. 21. 개정)

제12조(직능·소상공인교육원) 조삭제 (2017. 07. 21. 개정)

제13조(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① 센터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내 행정부서를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조신설 2017. 03. 17.)
② 부서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조신설 2017. 03. 17.)

제14조(기술사업화센터) ① 센터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기술사업화센터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내 행정부서를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조신설 2017. 03. 17.)
② 부서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조신설 2017. 03. 17.)

제15조 (상설기구) ① 산학단 부설 상설기구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두며, 부설기구의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구 규정에 따른다. (2021. 01. 29. 조신설)

제6장 비상설 기구

제16조(비상설 기구) 산학협력단장은 위·수탁 운영 협약 또는 외부사업 선정에 따라 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협약기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 보고서 등의 제출을 기산하여 6개월 이내 협약 또는 사업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구를 폐지한다. (조변경 2017. 03. 17.) (2021. 01. 29. 조변경)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는 2017년 7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제12조는 2017년 08월 3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